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) 정정사항

1. 대상펀드

-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(H)

2. 정정사유

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감사의견, 재무제표 확정 및 기타비용 업데이트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10.06.13. 시행)사항 반영
-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운용자산현황 및 집합투자업자 재무내용 및 자본금 업데이트
- 중개회사선정기준 정정사항 반영
- 오기 정정 (BlackRock Global Fund-> BlackRock Global Funds)

3.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일: 2010년 9월 10일 금요일

4. 투자신탁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)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운용자산현황 업데이트	- 작성기준일: 2010년 1월 29일 -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: 17개 - 다른 운용자산 규모: 2,745억원	- 작성기준일: 2010년 8월 31일 -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: 20개 - 다른 운용자산 규모: 4,188억원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•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(표)	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기타비용 등 업데이트	- 작성기준일: 2010년 1월 29일 - (표) 내용 중 (1) 기타비용 (2) 총보수 · 비용 (3) 합성 총보수 · 비용 (4) 증권거래비용	- 작성기준일: 직전회계년도 (2009.07.08.~2010.07.07.) - (표) 내용 중 (1) 기타비용 (2) 총보수 · 비용 (3) 합성 총보수 · 비용 (4) 증권거래비용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(2010.06.13. 시행)사항 반영	- 해지위험: 이 투자신탁은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해지위험: 이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

			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	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기타비용 등 업데이트	- 작성기준일: 2010년 1월 29일 - (표) 내용 중 (1) 기타비용 (2) 총보수·비용 (3) 합성 총보수·비용 (4) 증권거래비용 - 1,000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	- 작성기준일: 직전회계년도 (2009.07.08.~2010.07.07.) - (표) 내용 중 (1) 기타비용 (2) 총보수·비용 (3) 합성 총보수·비용 (4) 증권거래비용 - 1,000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확정 등	해당사항 없음	- 작성기준일: 결산1기 (2009.07.08.~2010.07.07.)기준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	해당사항 없음	- 작성기준일: 결산1기 (2009.07.08.~2010.07.07.)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해당사항 없음	- 작성기준일: 결산1기 (2009.07.08.~2010.07.07.)기준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- 자본금: 100억원 - ※ 집합투자업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개요 블랙록(BlackRock)은 미화 3.2조 달러 규모의 자산(2009년 9월 30일 기준)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, 직원 수 8,500여명,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운용센터와 현지법인, 사무소 등 글로벌 네트워	- 자본금: 120억원 - ※ 집합투자업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개요 블랙록(BlackRock)은 미화 3.15조 달러 규모의 자산(2010년 6월 30일 기준)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, 직원 수 8,500여명,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운용센터와 현지법인, 사무소 등 글로벌 네트워

		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	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- 제1기 요약 대차대조표 및 요약 손익계산서	- 제1기 및 제2기 요약 대차대조표 및 요약 손익계산서
라. 운용자산 규모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- 작성기준일: 2010년 1월 29일	- 작성기준일: 2010년 8월 31일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10.06.13. 시행)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/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/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을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/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10.06.13. 시행)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(www.blackrock.co.kr)·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(www.blackrock.co.kr)·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

		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생 략) ⑧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	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현행 동일)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중개회사선정 기준 정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양적/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. (1)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(중개수수료) 및 리서치의 가치 (2) 거래유형에 따른 매매체결	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양적/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. (1) 업무 역량(나이트데스크 유무, 브로커 영어 숙련도, 외국사 거래 여부 등) (2) 블랙록자산운용㈜를 위한

		능력 및 블랙록자산운용㈜를 위한 차별화된 매매서비스 (3) 중개회사의 규모 및 재무 건전성 등 발생 가능한 거래상대방 위험 (4) 결제 안정성을 위한 중개회사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및 시스템의 안정성 (5) 중개회사의 신용도	차별화된 매매서비스(거래 환경 편의성, 가격(best price) 조달 역량 등) (3) 거래 중 에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(시스템 안정성, 내부통제 구조 및 인력 등) (4)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 가능 서비스(리서치 지원, 처리 시간(turnaround time), 백오피스 역량 등) (5) 회사 기본 정보 (조직, 인력 등) (6) 회사의 재무 건전성 (자본/부채비율, 당기순이익의 안정성 등)

끝.